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0-77호

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95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(시설:학교)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(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"http://luris.mltm.go.kr"에서에서 열람가능)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건설과(☏665-4724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7월 8일

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

1.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조서

가. 학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	시설의종류	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65	연산중학교	학교	학교(중학교)	중학교(연산중학교)	연제구 연산동 955번지 일원	18,594	감)30	18,564	1977.10.05(부산시고시 제1629호)	

- 학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65	학교	•면적감소 A=18,594㎡→ 18,564㎡ 감) 30㎡	• 도시계획시설(학교)의 효율적인 관리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저촉되는 미 취득 사유지를 제외하고자 함 •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상의 시설명과 시설의 종류를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함

2. 관계도면 : 게재 생략(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).